#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46

발의연월일: 2025. 1. 23.

발 의 자:주철현·안도걸·박균택

박정현 • 양문석 • 박용갑

이병진 • 위성곤 • 김문수

한정애 • 이원택 • 조계원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형 어선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며, 수협은행 등이 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경감하는 등 어민에 대한 다양한 지방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5년 말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최근 고임금·고금리·고물가 속에서 어가경제가 위축되고 있어, 어려움에 처하는 어업인들이 증가하여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어업인들을 위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 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0조 및 제167조).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7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제9조(자영어민 등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	2
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u>2025년</u>	<u>2028년</u>
<u>12월 31일</u> 까지 면제한다.	12월 31일
③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	③
업권・양식업권에 대해서는 취	
득세를, 어업권·양식업권에 관	
한 면허 중 설정을 제외한 등	
록에 해당하는 면허로 새로 면	
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	
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를 <u>2025년 12월 31일</u> 까	<u>2028년 12월 31일</u>
지 각각 면제한다.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	관련 감면 등) ①
의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영어조	

합법인(營漁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융자할 때에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100분의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영어자금・영림자금(營林資金) 또는 축산자금을 융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5. (생략)

#### ② (생략)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제1항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지방세법」제1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u>2028년 12월 31일</u>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67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
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u>202</u>
<u>8년 12월 31일</u>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	
로 한다.		<u>.</u>